

##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

사업연도 (과세기간)	2022-01-01 ~ 2022-12-31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1.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(공익법인등)</b>	① 단 체 명      재단*****	② 대 표 자      지**
	③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      663-82-004**	④ 전화번호      055-283-****
	⑤ 소 재 지      경상남도 창원시*****	
	⑥ 유 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등 공공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종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(해당란에 √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선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타	

### 2.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

(단위: 원)

⑦ 구 분  ⑪ 기부자	⑧ 합 계		⑨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(종전 법정기부금)		⑩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제 1호에 따른 기부금 (종전 지정기부금)	
		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법 인	12	1,480,000,000	0	0	12	1,480,000,000
개 인	45	70,351,660	0	0	45	70,351,660
합 계	57	1,550,351,660	0	0	57	1,550,351,660

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제3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06월 20일

제 출 인

지\*\* (서명 또는 인)

창원 세무서장 귀하

#### 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2. ⑥ 유형란: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(공익법인 등)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.
3. ⑧ ~ ⑪ 란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.
4.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(「법인세법」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)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.